##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93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이해민·조인철·한민수

김우영 · 김선민 · 조승래

신장식 · 정춘생 · 오세희

정동영 · 신영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 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기업 또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국가전략기술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병무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전략기술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가전략기술 분야 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④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9조의2(국가전략기술 병역지
	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병무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
	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
	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
	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에 우
	선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기업이나 기관
	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u>아니한다.</u>
	④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
	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
	능요원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
	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
	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 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선정 된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 할 수 있다.